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2389
----------	------

제출년월일 : 2021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진작시켜 서울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2021회계연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사무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지역문화의·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3,000,000천원

※ 총 출연금액 58,762,649천원 (기정 출연금액 55,762,649천원)

2) 출연금 편성 내용

- 예술창작지원 사업비 : 3,000,000천원

3) 추경필요성

- '21년 예술창작지원 사업비는 총109.5억원이며 공모를 통해 562건의 예술단체(인)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4,346여건의 탈락자가 발생함.
· 선정비율(12.9%) : 신청건수 4,908건, 선정건수 562건
-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주도의 공연 및 창작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예술계 창작활동 지속을 위해 공공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공연건수(55% 감소) 및 공연 매출액(91% 감소)[공연예술통합전산망]
※ ('19.12월) 1,561건, 547억 ⇨ ('20.12월) 703건, 51억

다. 서울문화재단 기관 개요

1)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2) 규모 : 대지 1,520.2 m^2 , 건물 2,367.41 m^2 (지하1층, 지상5층)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박백웅 (☎ 2133-2557)